각국의 안전관계 법령집
-인 도-

박 창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차장〉

1. 인도의 법체계

가. 연방제

인도는 26개주와 6개의 정부직할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통상의 주 행정은 주의회가 선출하는 주의 주석(主席)장관이 주재하는 주 내각이 행한다.

1950년의 인도 헌법에 의하면, 헌법은 연방만이 가지며, 주에는 없다. 법령의 제정권한에 대해서 연방 관할사항, 주 관할사항, 공통 관할사항이 정해져 있으나, 정해지지 않은 것은 연방의 소속이다. 또한, 주의 전속 관할사항에서도 국가적 이해나 조약 실시에 관한 것이나, 비상사태 선언 중에는 연방이 입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같은 연방제국가이나 헌법에 열거된 사항 외는 주에 입법권이 있는 미국과 이 점에서 현저하게 다르며, 연방정부의 권한이 주에 비하여 우월하다.

나. 인도법의 특징

영국법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미법권에 속해 있다. 영미법의 Common Law는 판례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 외에는 알기 어려우나,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민지시대에 영국이 판례법을 법전 형으로 성문화하는 실험을 인도에서 행하였다. 따라서 인도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옛부터 근대적인 법률제도가 정비된 나라였다(예로, 계약법은 1872년). 그런 면에서 법전화에는 당시 영국의 Common Law를 그대로 써내려와 규정 내용은 제정 당시의 영국법과 흡사하며, 현재에도 영국법의 강한 영향하에 있다.

다 인도법의 조사방법

인도는 영국의 Common Law를 성문화하여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으나, 공식 법령집은 영국과 같이 매년 신규 제정의 법률 및 개정 법률만 제정 년도별로 발행된다. 따라서,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조사하려 하면, 최초에 그 법률이 제정된 년 이후의 법령집을 모두 조사하여 개정이나 폐지의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라. 인도에 투자시의 수속

인도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적 경제운영이 이루어지고, 국내 산업의 보호가 많아 외국 자본의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나, '91년 오라정권('96년 총선거 패배로 퇴진)의 수립으로 외자 도입을 대폭 자유화하는 신경제정책이 발표되어 투자수속이 많이 간략화되었다.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에는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 RBI)의 투자승인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 -그 외의 투자에는 외국투자추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FIPB)

또는 산업승인국(Secretariat for Industrial Approvals : SIA)의 사전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RBI의 자동 승인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이

- 외자비율이 51% 이하
- 투자우대 산업분야에 해당
- 당초의 자본재(공장설비 등)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외자가 독자적으로 조달할 것
- (공장설비 등)수입 기계류는 모두 신품일 것
- 일정한 소비재산업인 경우, 제조 개시에서 7년간 해외로의 배당에 필요한 외화가 해당 기업의 수출로 커버될 것

인도에서 사업을 지점·사무소 등에서 하는 경우, ①현지법인을 '56년 인도회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방법, ②인도설립의 비법인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의 방법은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마. 인도의 안전방재에 관한 법령

(1) 안전방재에 관한 법령의 제정 권한

연방과 주의 법령 제정 권한은 인도 헌법 제11장에 규정되어 있고, 연방 전권사항, 주 전권사항, 연방과 주의 쌍방이 법령 제정 권한을 갖는 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만, 주 전권사항도 국가적 이익에 관련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방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제249조). 또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은 연방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다.

(2)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National Building Code of India : 이하 빌딩 코드)

빌딩 코드 자체는 법률이나 인도규격에서도 없으나, 모든 건축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이 되도록 제정되었고, 각 주는 빌딩 코드에 따라서 건축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빌딩 코드는 미국의 빌딩 코드와 동일하게 건축분야에 관한 Model Code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Gujarat, West Bengal, Delhi 등의 주요 주는 전부 빌딩 코드에 맞추어 주의 법령 개정안 작성작업을 마쳐, 실질적으로는 빌딩 코드가 인도 전역에 공통적인 건축안전관련의 기본법규라고 할 수 있다.

빌딩 코드와 각 주의 건축관련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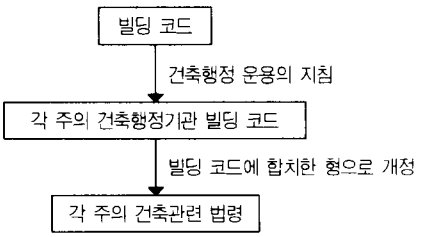

가) 빌딩 코드의 구성

①정의
②건축행정
③개발 규제와 일반적인 건축물의 요구사항
④방화
⑤건축재료
⑥구조
⑦건축실무
⑧건축물의 부대 서비스(조명, 전기설비, 공조, 관내 방송, 엘리베이터)
⑨건축물 내 배선
⑩표시, 옥외 표시

나) 빌딩 코드에 정한 건축허가 수속

빌딩 코드 제2부 건축행정편에서는 건축허가 수속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빌딩 코드의 적용 대상

빌딩 코드는 건축물의 신·증설, 용도변경, 일부 철거된 건축물의 잔재부분에 적용된다. 증·개축,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건축물 전체에 적용된다.

한편, 기존 건축물에는 건축행정 담당부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빌딩 코드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한, 특정한 건축재료나 설계방법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②빌딩 코드의 운용

빌딩 코드는 법률로 정해진 건축행정 담당부서가 임명하는 Building Official(건축물 검사부장 : 이하 B.O)이 운용한다. B.O는 건축행정 담당부서가 허가한 빌딩 코드의 운용에 필요한 수의 관리직, 기술보조직, 검사관, 기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B.O의 조력자는 감독사의 자격이 필요하다. B.O나 그 부하는 건축공사나 건축물에 관한 노동자의 파견이나 자재 판매 등에 직·간접으로 관계하지는 않는다.

B.O에게는 광범위한 권리·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건축허가신청의 접수·허가 및 건축물이 허가 증대로인가 어떤가의 검사
- 위법 또는 위험한 건축물에 관한 수거, 안전조치 등의 통보, 명령
- 입회조사, 보고를 명할 권리, 공인기관(또는 유자격의 개인)에 의한 검사보고서의 승인
- 건축허가신청과 다른 내용의 건축을 방지
- 용도가 허가조건과 다른 경우의 시정명령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개별안건에 관하여 빌딩 코드의 수정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안건에 관하여 빌딩 코드의 내용이 부적당하거나, 특례를 인정해도 안전이나 공공의 복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빌딩 코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그 경우, 변경 내용은 문서로 보존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③개발허가/건축허가/사용허가

특정의 경미한 개축을 제외하고, 모든 개발, 증축, 증·개축 등에는 개발허가 및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철도, 항만, 고속도로, 공항 그 외의 타 연방에만 법령의 제정 권한이 있는 시설에 대한 州의 허가는 불필요하다.

④허가신청의 방법 및 기재사항

개발허가/건축허가/사용허가의 신청에는 건축가, 엔지니어, 구조엔지니어, 도시계획가 등의 유자격자 증명서가 필요하다. 개발허가/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을 경과해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 높이 15m 이상의 건축물, 교육시설, 병원, 공장, 위험물 창고, 500㎡ 이상의 복합용도빌딩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나타나 있는 이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상기 건축물에 관하여 B.O는 우선 소방서에 의견을 청취한 후가 아니면,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신청서에는 Key·Plan, Side·Plan, Sub·Division/LayOut·Plan, Building·Plan, Service·Plan을 첨부하여 건축사, 엔지니어, 감독사 등의 유자격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인도에서의 건축신청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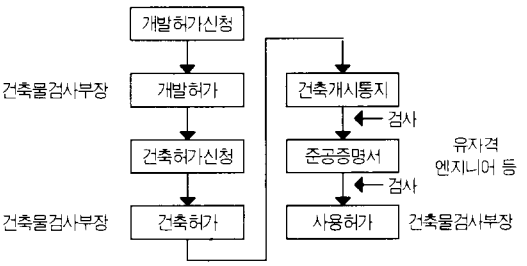

⑤검사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검사 대상이며, 특별한 위험을 갖는 건축물은 건축행정 담당부서가 임명하는 특별검사관의 계속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인도의 방화·방폭에 관한 규제

가. 규제의 틀

방화·방폭에 관한 규제는 주마다의 법령에 따라 행해지나, 각 주의 법령은 빌딩 코드를 기초로 제정되며, 실질적으로는 빌딩 코드가 인도 전역에 공통적인 건축안전관련의 기본 법규이다.

빌딩 코드는 건축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나, 상세는 인도규격을 준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규제

2) 피난설비에 관한 규제
3) 화재감지경보장치에 관한 규제
4) 소화설비·기타에 관한 규제

한편, 피난훈련은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빌딩 코드에,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나.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 관련 규제

빌딩 코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방화에 관한 요구사항에 특칙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마다 방화·방폭에 필요한 사항의 상세는 별도 자료 참조.

다. 화재·폭발에 관한 법령규칙의 운용 상황과 유의점

과거 조사한 다른 아시아제국의 수준에 비해 빌딩 코드가 건축물에 요구하는 방화·방폭의 수준은 높지 않다. 인도의 경우,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커, 지역에 따라서는 빌딩 코드의 수준을 만족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자치체에서는 빌딩 코드의 내용을 일부 완화하여 건축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 전체가 아니더라도 현지 시공주의 경제상태 등으로 빌딩코드의 요구 사항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빌딩 코드의 요구사항을 전부 만족하는 건축물이라도 그것만으로는 방화 대책이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인도에 진출시는 빌딩 코드의 요구 이상인 대책을 강구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이 준공, 사용허가를 받기까지는 소방서가 건축물의 방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봄베이 시내의 경우, 소방서의 방화검사를 수년에 1회 정도로 받지만, 검사 내용은 간단하여 실제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는 적다). 빌딩 코드 이외의 방화 관련 기준으로는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의 설치에 대해 한국의 보험개발원에 해당하는 Tariff Advisory Committee(TAC)가 가이드 라인을 설정, 여기에 합격하면 화재보험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TAC의 가이드 라인은 빌딩 코드의 요구사항보다도 엄격하다.

인도에서는 건축물 방화에 대한 배려나 방화관련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방화설비의 유지관리 요원을 둘 필요가 있고, 봄베이의 어떤 호텔(객실수 약 900개)에서는 화재감지기의 시험을 뺀,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 엘리베이터, 보일러, 공조설비, 자가발전설비, 변압기 등의 설비 전부의 유지관리를 자사 요원이 행하며, 따라서 기술계 요원을 230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인도는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취해 왔으므로 건축물의 임차인 권리가 대단히 강해,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 한, 빌딩이 노후해도 어쩔 수가 없다. 따라서, 봄베이 등에서는 시내 중심부에도 노후한 빌딩이 다수 보인다. 이들 빌딩에는 건축 당시의 빌딩 코드가 적용되므로 방화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빌딩 코드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빌딩 화재도 많으며, 봄베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다리차로 소화활동이 가능한 것은 10층 정도이며, 그 이상의 층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자연소화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봄베이를 위시한 대도시에서는 상기와 같이 재건축이 곤란하여 오피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여 조건이 좋은 장소에 방재설비가 갖추어진 오피스를 임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참고 : 본 내용 중의 원문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 78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